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혹한 군기훈련 금지조항 마련〉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65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기훈련 실시 시에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 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u>훈련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u>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 ----- ----- -----. ----- <u>훈련 대상자의</u> ----- ----- ----- -----하되, <u>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훈련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u>
1. ~ 3. (생략) ②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8조의2¹⁾에서는 지휘관이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군기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5월 육군 12사단에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함²⁾에 따라,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과도한 군기훈련을 방지하거나 과도한 군기훈련 실시자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가혹한 군기훈련을 방지하고,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의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³⁾라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상향입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취침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규정에 어긋난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 및 선착순 땀걸음 등 군기훈련을 실시하다가 훈련병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입원치료 중 2일 만에 사망함.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됨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정안은 가혹한 군기훈련에 대해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가혹한 군기훈련 실시 시에 실시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군기훈련의 장점인 군기 확립 및 대상자의 체력증진, 정신수양 등을 취하면서 과도한 군기훈련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법 개정시 지휘관이 군기훈련 강도를 결정할 때 지나치게 신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군의 군기훈련 자율성을 저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의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라는 규정은 그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동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군기훈련 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 등을 초과하여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군기훈련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편, 동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60호)이 제안된 바, 이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